

2023년도 경영직 채용계획(안)

1. 선발인원

☐ 총 2인 (경영직 1인, 안전관리자 1인)

구분			주요업무	기본연봉
신입5급 (사원)	사업관리	1인	- 사업장 및 서비스 제공·관리 - 사업장 정원 및 업무과업 관리 - 관리감독자 업무 지도·감독 등	29백만원 이상
	안전관리자	1인	-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업무 - 사업장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-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상 관련 업무	

※ 식대(14만원/월), 복지포인트(40만포인트/연), 명절휴가비(80만원/연), 제수당 등 별도

2. 근무조건

☐ 근무기간 : 2023.08.09.(수) ~

☐ 근무장소 : 케이워터운영관리(주) 본사 (대전)

☐ 근무형태 : 통상근무 (주 5일 40시간)

☐ 복리후생 : 식대, 복지포인트, 명절휴가비 등

☐ 보수 및 복지 : 케이워터운영관리(주) 사규에 따름

3. 전형절차

입사지원		서류전형		1차 면접전형		2차 면접전형		입사
입사지원	⇒	필수자격 점검 및 적부판정	⇒	직무,상황면접 인성검사 (2배수 선발)	⇒	인성, 직무면접 (1배수 선발)	⇒	수습평가 (입사후 3개월내)
'23.7.20.(목)~ '23.7.26.(수)		'23.7.28.(금)		'23.8.2.(수)		'23.8.4.(금)		'23.8.9.(수)

4. 지원자격

☐ 필수자격

구 분	자 격 기 준
공통	- 응시자의 지역, 성별 제한 없음 (단, 정년연령 미만인 자) - 임용예정일('23.08.09.) 기준, 현업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 - 병역필 또는 면제자 (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) -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- 케이워터운영관리(주) '채용결격사유'에 해당되지 않는 자 - 교수 추천서 및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공문으로 추천된 자 - 2023년 8월 이내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(졸업 후 3년 이내) - 수학기 학점 평균 3.5이상 (4.5 만점 기준) - 운전 가능자 (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 必)
안전관리자	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

☐ 우대요건

구 분	우 대 기 준
사업관리 및 안전관리자	• 사업관리 실무경력자 우대 : 위험성 평가, 산업재해, 안전교육 등 • 공공기관 근무 경험자 우대 • 관련 학과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

☐ 결격사유

참 조	채용결격사유
1.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7.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고 5년, 해임처분을 받고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.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. 신체검사 불합격자 10.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	

5. 가점사항

구 분	대 상	가 점
법률상 가 점	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	면접전형 만점의 5%, 10%
특 별 가 점	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	면접전형 만점의 5%
	전문자격증 소지자 - 변호사, 공인노무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 자격에 한함	면접전형 만점의 10%

※ 가점은 유리한 하나만 적용하나, 법률상 가점은 중복 적용 가능

※ 법률상 가점은 전형단계별 점수가 만점이라도 가점 부여

※ 법률상가점은 관계법령에 따라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이 3인 이하일때는 미적용

※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
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
-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
-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
- 5.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
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
-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

※ 장애인의 범위
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

6. 제출서류

구 분	제 출 서 류		방 식
서류접수	공통	1.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 2. 경력사항, 교육사항, 자격사항 등 증빙 사본 3.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, 장애인 증명서 사본	학교 제출
면접전형	해당자	1. 채용결격사유보완서약서	현장작성
최종합격		1.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2.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. 급여통장 사본 1부 4. 경력사항, 교육사항, 자격사항 등 증빙서류 5.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, 장애인 증명서 6. 병역사항 확인서류 (병적확인서 등)	원본서류

[유의사항]

- 제출서류와 입사지원서 상의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이의제기는 처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-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제출서류는 평가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.
- 제출서류는 지원마감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바랍니다. (단, 인턴수료증 등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)

7. 유의사항

- 반드시 숙지 후 지원 **바랍니다.**
-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케이워터운영관리(주) 사내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.
- 전형절차·일정과 관련된 각종 안내 및 변경사항은 채용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연락처 착오기재, 연락불능(E-mail, SMS 수신불능 등)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
-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오류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최종 제출한 입사지원서는 수정 및 지원취소가 불가하오니, 반드시 최종 제출 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첨부서류의 낮은 해상도, 문서잘림 등의 사유로 내용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전 첨부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최종합격자 결정 후 신체검사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지원인원 미달 또는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.
- 케이워터운영관리(주)는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도 받지 않으며,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.
- 케이워터운영관리(주)는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며, 입사지원 시 채용공고문 및 입사지원서의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- 지원서 작성 시 자기소개서 등에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성별, 출생지, 학력, 가족관계, 소속조직명 등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본 채용계획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내용을 공고합니다.
- 채용전형 기간에는 긴급한 문의가 많습니다. 공고내용 단순 확인 등의 문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공고에 미기재된 내용은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제출서류 반환
 - 지원자가 제출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「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을 준용, 채용서류 반환청구 후 서류 반환 처리
 - 채용 확정된 대상자는 제외하며 온라인 등으로 제출한 사본의 경우 반환하지 않음
 -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
 - 이메일 (recruite@kwateromc.co.kr) - [채용서류 반환청구]

붙임 1

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방법

신청·조회·발급

분류	대분류 전체	중분류 전체	소분류 전체
기관	기관분류 선택	제공기관 전체	☐ 모바일신청 가능서비스
☒ 민원서비스 ☒ 정부서비스		취업지원대상자	검색 ☐ 결과 내 재검색

신청순 | 정확도순 | 가나다순

취업지원대상자증명(국가유공자등)

취업지원 대상자가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아 취업하기 위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국가기관 또는 업체 등의 장에게 그 증명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
신청

민원서비스 국가보훈처 · 인증서 필요(본인)



문서확인번호:



문의

제: 호			
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			
취업보호 대상자	보훈번호	국가유공자 등과의관계	
	성명	생년월일 (성별)	
	주소	전화번호	
응도		가점비율	
제출처	케이워터운영관리(주)		
위 사람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10일 이내에 취업사실을 소재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.			
지청장			
※ 유의사항 1.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위 취업지원대상자를 채용 또는 고용한 경우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10일 이내에 취업사실을 소재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. 2. 취업 사실을 통보할 때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취업정보시스템(http://job.mpva.go.kr)에서 제공되는 취업자 통보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			
주: *	주소:	전화:	
담당부서명:	보훈과	전자우편:	

◆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, 정부24(gov.kr)의 인터넷발급문서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(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)

구분	입력방식
신청절차	1. 정부24(www.gov.kr) 2. 서비스 3. 신청·조회·발급 4. 취업지원대상자증명 발급 신청 5. 로그인 후 발급
비고	하단에 정부24에서 발급받았음이 명시되어야 하며, 상단에 문서확인 번호가 명시되어야 함

붙임 2

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

신청·조회·발급

분류	대분류 전체	중분류 전체	소분류 전체
	기관분류 선택	제공기관 전체	☐ 모바일신청 가능서비스
기관			
☒ 민원서비스 ☒ 정부서비스 장애인			검색 ☐ 결과 내 재검색

신청순 | 정확도순 | 가나다순

장애인증명서 발급

장애인등록증을 보실하여 재교부 받는 기간동안 **장애인증명서**가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기관 등에서 요구하여 **장애인**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 **장애인증명서**를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

신청

민원서비스 보건복지부 · 인증서 필요(본인)



문서확인번호:



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[별지 제9호서식]

제 호	
장 애 인 증 명 서	
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)
영문명	
주소	
보호자 (필요시 기재)	보호자와의 관계 (필요시 기재)
주장애 및 장애 정도	무장애 및 장애 정도
등록번호	최초 · 재취득 등록일자
종합 장애 정도	
제출처 및 용도	
위 사람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합니다.	



◆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, 정부24(www.gov.kr)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(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) 또한 문서확인번호도 진위확인(정부24 앱 또는 스캐너를 문서확인프로그램)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구분	입 력 방 식
신청 절차	1. 정부24(www.gov.kr) 2. 서비스 3. 신청·조회·발급 4. 장애인증명서 발급 신청 5. 로그인 후 발급
비고	하단에 정부24에서 발급받았음이 명시되어야 하며, 상단에 문서확인 번호가 명시되어야 함